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713
-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찬성자 15명)
- 발 의 일 : 2020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정책(2012년), 협치 정책(2016년) 추진 등을 통해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고 공익 활동을 하는 영역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범위와 보상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사·도 계획 수립’, ‘사·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 변화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 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시행계획 의무를 신설함(안 제7~8조).
-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마.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 바.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 사.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 설치 조항 근거를 신설함(안 제13~19조).
- 아. 권역별NPO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 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17조를 삭제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2020. 8. 26. ~ 9. 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2020.5.26.)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과 함께 서울시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3년 5월 동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NPO지원센터 조성 및 권역별(동북, 동남, 서남(추진중)) NPO지원센터 조성과 다양한 시민공익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및 서울시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대통령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시민, 시민사회, 공익활동 등에 대한 정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조례명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기본이념)	-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제3조(정의)	-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p>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함. -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함. -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함. -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함.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함.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함.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조(다른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등과의 관계)	<p>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p>
제7조(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 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1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시장이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수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함.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를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함. -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조례에 따름.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함. -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제14조(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됨.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

	<p>는 위촉함.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p>에 해당하면 소집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p>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p>-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p> <p>-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p> <p>-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p> <p>-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p> <p>-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p>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p>-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p>
제19조(위원회 존속기한)	<p>-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p>
제20조(설치)	<p>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음.</p>
제20조(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센터의 위탁)	<p>-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교부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제24조(센터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제25조(이용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이용료 등 이용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거나 시에 납부하여야 함.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봄.

나. 세부 내용 검토

1) 조례의 제명과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안 제3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함도 있는바, 이를 목적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현행	전부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 안 제2조는 ‘기본이념’을 신설한 조항으로, 현행 제3조의 ‘기본원칙’은 삭제하였음.
- 안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는 서울시의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서울시에만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조는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자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 현행 제3조의 ‘기본원칙’과 같이 서울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사회 발전에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현행	전부개정안
<p>〈신 설〉</p>	<p>제2조(기본이념) <u>이 조례는 시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고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p>
<p>제3조(기본원칙)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NPO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p>	<p>〈삭 제〉</p>

○ 안 제3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시민”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는 구역을 경계로 하는바, 동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정의를 이와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민의 범위 확대가 동 법상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p>〈신설〉</p>	<p>1. “<u>시민</u>”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p>	<p>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p>	<p>제2조(정의) 1. “<u>시민</u>”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u>민주시민교육</u>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u>시민</u>”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p>

<p>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p>				<p>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p> <p>4.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p>
--	--	--	--	--

- 또한, 제2호에서는 현행 “시민공익활동”을 “공익활동”으로 개정하였으며,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1. “<u>시민공익활동</u>”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 “<u>공익활동</u>”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p>

-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시민사회조직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NPO의 정의는 삭제하고 있음.
- 동 조례의 목적과 지방자치의 역할을 살펴볼 때 동 정의가 전국단위의 시민사회(안 제3호), 시민사회 활성화(안 제4호), 시민사회조직(안 제5호)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등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상위법령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동 조례에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 지원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의 정의가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가정 중요한 기준임을 감안하여 상위법 제정¹⁾ 등 시민사회의 합의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p>2. “NP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삭 제></p> <p>3.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p> <p>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p> <p>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p>

1)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2020.5.29., 임기만료 폐기),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2020.5.29., 임기만료 폐기)

	<p>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p> <p>6. <u>“비영리 일자리”</u>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p>
--	--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2020.5.29., 진선미의원발의, 임기만료 폐기),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2020.5.29., 권미혁의원발의, 임기만료 폐기)

진선미의원법률안	권미혁의원법률안	개정안
<p><u>“시민사회”</u>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p>	<p><u>“시민사회”</u>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p>	<p><u>“시민사회”</u>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p>
<p><u>“시민사회조직”</u>이란 시민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p> <p>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p> <p>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p> <p>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p> <p>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p>	<p><u>“시민사회조직”</u>이란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p>	<p><u>“시민사회조직”</u>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p>

<p>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p> <p>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p> <p>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p> <p>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p> <p>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p> <p>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p> <p>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p> <p>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p> <p>파. 그 밖에 3명 이상의 구성원을 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p>		
---	--	--

-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개정안 “시민사회조직” 중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까지도 시민사회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조직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조례의 정의에서는 NPO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나, 조례에 NP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NPO에 대한 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동 조례는 상위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NPO 등을 포괄하는 더 큰 규모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NPO지원 등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2) 시장의 책무 등(안 제4조~안 제6조)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시장의 책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 과정 이행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 지원
7. 시민사회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시장의 책무를 개정하여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 책임 등 시민사회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도 함께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안4조제4항의 경우는 시민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는(이하 “시장”이라 한다)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u>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미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4조제4항의 재정적 지원이 포괄적 보조금 지원근거로 사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7., 2017. 7. 13., 2019. 12. 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등(안 제7조~안 제9조)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4. 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1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자치구가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자치구가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동 령 제3조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동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령과 같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8.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책임있는 행정 구현 및 대통령령의 규정에 맞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의 보완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u>	제8조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u>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u>	제8조 ② <u>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 또한, 안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7조제6항에 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행정의 고유 권한으로 직접 그 규모나 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단기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업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u>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단·평가</u> 2. <u>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목표</u> 3.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u> 4. <u>시민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방안</u> 5. <u>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u> 6. <u>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u> 7. <u>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u> 8.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u>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의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1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안 제10조~안 제12조)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를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 안 제10조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를 집적·공유,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공익활동에 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사회조직의 범위가 방대하고 그 대상이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공익성, 자발성, 봉사성에 근거한 공익활동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가치의 환산 등을 포함한 인정체계 마련은 공익활동의 순수성이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 서울시에서 공익활동에 대해서만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이 타 시도와의 괴리 등으로 인한 공익활동가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공익활동 인정체계 마련이 서울시민의 눈높이 부합되고 동의되는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설의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구체적인 기능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 특히, 동 시설과 현재 운영중인 NPO 지원센터와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 기능과 관계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행 조례의 NPO 정의²⁾ 규정에 따라 시민 공익활동과 NPO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동 지원센터를 조성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NPO의 정의 등은 삭제하였음에도 여전히 NPO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동 센터의 명칭이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시장이 조성하는 시설인 “공익활동 지원시설 및 NPO지원센터”의 이용에 대하여 안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서는 사용료로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이용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절한 규정인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익활동 지원시설	NPO지원센터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2) 제2조제2호 "NP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p>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u></p> <p>⑤ <u>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조례에 따른다.</u></p>	<p>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p> <p>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p> <p>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p> <p>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p> <p>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p> <p>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p> <p>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p> <p>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p>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25조(이용료 등) ① <u>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센터의 시설 및 설비 이용료 등 이용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거나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u></p>
---	--

5)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안 제13조~안19조)

-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현행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해촉, 존속기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u>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u> 2.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u> 3. <u>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u> 4.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5. <u>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u> 6. <u>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u>

	<p><u>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③ <u>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u></p> <p>④ <u>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7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NPO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PO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p>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NPO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p> <p>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u>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u>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u>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u></p> <p>③ <u>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u> 3. <u>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u> 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u>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u></p>

	<p><u>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⑤ <u>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u></p>
<p><u>〈신 설〉</u></p>	<p>제15조(해촉)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u> 2. <u>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 4. <u>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 5. <u>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u>연 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p>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u>연 4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p>있을 때</p> <p>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가 있을 때</p> <p>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⑥(삭제)</p>
<p><신 설></p>	<p>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p> <p>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9조(위원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p>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대통령령(「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를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로 하여 NPO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 심의 등의 기능을 대통령령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및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사항” 등으로 개정하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구성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고,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 및 해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한 규정 및 여비와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음.
-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가 직접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 위원회는 심의 기구인바,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 개최 등의 사항”은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	제13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p>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u>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u> 2.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u> 3. <u>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u> 4.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5. <u>시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u> 6. <u>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p>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위해,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p>	<p>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p>

<p>원장 <u>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NPO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PO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p>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NPO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p> <p>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장 <u>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u>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u>당연직 위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u></p> <p>③ <u>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2. <u>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u> 3. <u>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u> 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u>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⑤ <u>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u></p>
<p>〈<u>신 설</u>〉</p>	<p>제15조(해촉)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u>

	<p><u>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u>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u></p> <p><u>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u></p> <p><u>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u>연 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u>연 4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p>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⑥(삭제)</p>

<p><신 설></p>	<p>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u>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② <u>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u></p> <p>④ <u>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p>⑤ <u>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신 설></p>	<p>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u>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협의체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19조(위원회 존속기한) <u>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u></p>

6)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등(안 제20조~안 제25조)

-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p>	<p>제20조(설치) 시장은 <u>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u></p>

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5.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7.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왼쪽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④ 〈왼쪽과 같음〉

제12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자는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NPO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등 이용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왼쪽과 같음〉

② 〈왼쪽과 같음〉

제24조(센터의 운영) 〈왼쪽과 같음〉

제25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왼쪽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거나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고, 권역별 NPO지원센터(「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2018년),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2020년))를 조성한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
- 동 조례에는 권역별 NPO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가 없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시에 권역별 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었음.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권역별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법규상 근거 없는 행정 및 사후치유적인

조례 개정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의 NPO지원센터의 기능 중에는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 되는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다만,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은 대상의 불명확성, 불특정성 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 특히,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할 경우 명확하게 규정된 조건이 있는바, 조례 제정 이후에도 동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301 일반보전금	06. 민간인 국외여비	
		1. <u>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u>	

-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르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위한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소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생략

제4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총장을 제외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심사·허가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여행계획서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여행방침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허가권 중 책임운영기관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권을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공무국외여행 사전협의, 신청과 허가,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적절성 및 적합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3.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여행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를 의뢰한 경우

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4.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명확성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주된 동인(動因)인 공익활동가 연수 지원시, 서울시 관변활동가 전략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교육 및 연수를 지원 받는 공익활동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사하는 뚜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외 연수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9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p>
<p>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5.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7.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제21조(기능)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되는 교육·훈련·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p> <p>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2조(센터의 위탁) ① <u>〈왼쪽과 같음〉</u></p> <p>② <u>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③~④ <u>〈왼쪽과 같음〉</u></p>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자는 센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NPO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등 이용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왼쪽과 같음〉

② 〈왼쪽과 같음〉

제24조(센터의 운영) 〈왼쪽과 같음〉

제25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왼쪽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거나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민민주주의 내실화 등은 등록 또는 비등록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공익을 위한 헌신적인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 부재 등에 따라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인정과 현실적이 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자율적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제도화와 지원 확대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공익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결집되어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바,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시민사회조직 등에 대한 정의와 지원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자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26] [대통령령 제30718호, 2020. 5. 26, 제정]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 044-200-2838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①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할 것
 3.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없앨 것
 4. 시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제1항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방안
4.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과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8.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2. 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민사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비서실의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포상) 위원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정부위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시민사회 관련 현황·통계 조사

5.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연구기관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사·연구 수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과제 수행 및 시정 요구 등 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부칙 <제30718호, 2020.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